이 사 직 무 수 행 규 준

I. 이사의 기능과 제도의 목적

1. 1. 최고 경영의사 결정에의 참여

이사회는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방침과 장기적인 경영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서 업무집행을 결정하며 이사와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발휘하고 자신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2. 회사의 이익 보호

이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

1. 3.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

이사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이사의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1. 4. 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사외이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사내이사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다.

II. 이사의 법적 지위

2. 1. 회사의 수임인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受任人)이고, 자신을 추천한 주주나 선임에 기여한 주주들의 대리인이나 수임인은 아니다.

2. 2.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

이사는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이다. 따라서 이사는 그에 부합하는 주의(注意)를 다하여 회사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3. 경영의사결정자의 지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최고 경영의사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고,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그 밖의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4.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나, 이사로서의 법적인 권한,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2. 5.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

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사는 자신의 행동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사외이사는 이와 같은 이사의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에 유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III. 사외이사의 선임

3. 1.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선임의 공정성

사외이사가 회사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선임에 있어서의 공정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경영자 · 주주 · 사외이사가 공히 인식하여야 한다.

3. 2. 대주주의 영향력 자제

대주주는 가족이나 친지, 관련회사의 임 · 직원 기타 측근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는 것을 삼가하고 또한 이에 해당하는 인사가 스스로 사외이사에 취임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단, 회사법 등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3. 사외이사의 겸임 자제

사외이사는 이사로서의 업무의 충실과 기업비밀의 유지를 위해 복수의 회사에 사외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쟁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할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겸임을 삼가야 한다.

3. 4. 사외이사의 적격성

회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회사의 업무에 대한 적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회사의 업무에 대해 숙지하고 있고 판단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3. 5. 사외이사 추천배경의 공개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나 이사 등은 자신과 사외이사 후보와의 관계와 추천이유를 밝혀야 하고, 회사 또한 당해 사외이사 후보가 추천된 배경 등을 가능한한 공개하여야 한다.

Ⅳ. 이사의 기본적인 권한과 의무

4. 1. 이사 직무의 목표

이사는 회사경영의 주체로서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되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들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4. 2. 이사의 권한

1) 이사의 기본적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에의 출석권과 의결권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권 및 이사회의 감독권행사에 참여하는 권한
2) 위의 1)의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 이사회의 소집권
   ② 대표이사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
   ③ 회사의 자산상태를 조사할 권한
   ④ 회사의 장부 등 주요서류를 열람할 권한
   ⑤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등 상법상의 각종 소제기권

4. 3.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권한은 동시에 이사의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사가 이러한 권한행사의 필요성을 지득한 때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행사할 의무를 진다.
2) 이사는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Ⅴ. 이사회 결의에 관한 이사의 책무

5. 1. 이사의 이사회 출석의무

이사회의 출석은 이사의 기본적 의무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삼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함으로써 부당한 결의를 막지 못했다면 추후 책임추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5. 2. 의결권 위임의 금지

이사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이사의 의결권은 이사 개개인의 성실성과 판단능력을 신뢰하여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5. 3. 의사결정의 요령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하는데 있어 의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해 결의가 회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신중한 판단을 거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5. 4. 정보 확보의 필요

사외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의안과 관련된 회사의 사정이나 정보에 어둡기 쉽다는 점을 유념하고, 따라서 의안의 내용과 관련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결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회사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5. 5. 이사회에서의 자세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능한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이사는 원칙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의 두가지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기권과 같은 중립적인 입장 표명은 삼가하여야 한다.

Ⅵ.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6. 1. 책임의 일반원칙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수 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이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6. 2. 임무해태

임무해태(任務懈怠)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이사가 기울여야 할 주의는 영리단체의 경영관리자로서의 주의이므로 통상인의 그것보다는 그 정도가 높으며 또한 업무의 적법성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업무의 합리성 및 효율성에 대한 것까지 미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6. 3. 찬성이사의 연대책임

이사의 정관 또는 법령 위반행위 또는 임무해태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6. 4. 반대이사의 연대책임

회사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이사의 반대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권리행사나 조치가 취해지지 못한 경우, 그러한 권리불행사나 조치미이행도 정관 또는 법령 위반행위 또는

임무해태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에 반대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6. 5. 입증책임

이사회에서의 결의의 찬성 혹은 반대는 이사회 의사록으로 추정한다.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였음에도 이사회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대한 이사는 자신이 반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6. 6. 경영판단의 법칙

이사는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과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사후적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Ⅶ. 이사의 보수

7. 1. 보수결정의 원칙

이사의 보수는 이사의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지녀야 하며,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적정하여야 한다.

7. 2. 보수성 경비

회사는 이사에게 보수가 아닌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함에 있어 실비변상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7. 3. 퇴직금의 지급 제한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4. 회사 주식의 보유

이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자거래금지규정이나 기타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절차 및 내용상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회사주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Ⅷ. 이사의 주의의무

8. 1. 자기거래의 제한

이사는 이사회 승인없이 회사와 자기거래(自己去來)를 할 수 없으며, 이사회 승인 결의시 당해 거래의 배경, 목적, 당해 거래로 자신이 얻는 이익 등을 이사회에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8. 2. 자기거래의 공정성

이사가 회사와 자기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의 합리성 및 공정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에 따른 책임에서 모두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8. 3. 경업(競業)의 금지

이사는 이사회 승인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에 취임할 수 없으며, 이사회 승인 결의시 당해 거래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 취임의 배경, 목적, 그로 인해 자신이 얻는 이익 등을 이사회에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 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 취임에 따른 책임에서 모두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8. 4. 신주 등의 인수

이사가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주나 실권주 또는 단주를 인수할 때에는 내용 및 절차의 공정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8. 5. 신주 인수 등과 회사의 자금 부담

이사가 회사에서 발행하는 신주나 실권주 또는 단주를 인수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보증을 이용하는 등 회사에 부담을 가해서는 안된다.

8. 6. 이해중개의 금지

이사는 자신의 관련회사나 기타 제 3 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거래를 알선하거나 기타 편향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8. 7. 이해개입의 금지

이사는 회사에 인사청탁을 하거나 기타 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회사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

8. 8.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회사에 관한 비밀정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는 등 공개하거나(守秘義務), 자기 또는 제 3 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비밀이용금지).

lX. 개별 사안에 관한 이사의 주의사항

9.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작성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운영규정 기타 이사회의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또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해서는 안된다.

9.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특정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을 결의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이 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가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임·직원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에 비하여 회사의 수익신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임·직원의 기여도에 비추어 부여하는 주식의 수량이 적정한가

9. 3. 영업양도·양수의 결의

주주총회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안을 상정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의문을 가지고 유의하여야 한다.

1) 양도하는 영업재산이 회사에 불가결한 것이 아닌가
2) 양수하는 영업재산이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것인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3) 영업의 양도 또는 양수로 인해 회사나 상대회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가
4) 양도 또는 양수하는 재산의 평가가 적정한가, 그리고 양도 또는 양수가액이 적정한가
5) 영업의 양수로 인해 회사의 자금사정이 경색되지 않는가
6) 양도 및 양수의 상대방이 회사의 대주주 또는 경영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그 관계로 인해 거래가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없는가
7) 양도 및 양수가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며, 어느 정도의 주식매수 청구가 있을 것인가
8) 양도 및 양수로 인해 초래될 조세부담이 어떠한가

9. 4. 중요 재산의 처분·취득

중요한 재산 또는 고액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결의를 할 때에도 앞의 9.3.에 준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5. 평가의 객관성 보장

자산이나 영업의 양수·양도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자산이나 영업의 가치평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인된 감정사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6. 자금차입의 결의

회사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용도의 적정성, 차입의 필요성 및 다른 양호한 자금조달 방법의 유무
2) 금리 등 자금차입조건의 공정성 및 보다 유리한 거래방법의 유무
3) 회사의 원리금 상환능력
4) 자금차입으로 인한 조세부담

9. 7. 투자결정

다른 회사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투자가치의 유무 및 장래 수익의 전망
2) 투자대상회사의 자산의 건전성
3) 투자대상회사의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관리자의 경영능력
4) 투자대상회사의 노사관계의 안정성
5) 투자주식 및 투자회사 관리의 난이도
6) 투자자금조달의 건전성과 투자로 인해 회사의 자금사정에 미칠 효과
7) 투자주식의 처분의 가능성, 용이성
8) 투자주식으로 인한 조세부담

9. 8. 새로운 사업에의 투자

회사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경우 또는 생산시설에 관한 투자를 결정할 경우에도 앞의 9.7.에 준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9. 9.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

회사와 이사간의 자기거래를 승인하는 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당해 이사와의 거래가 회사로서 불가피한가
2) 거래의 가격 기타 조건이 통상의 다른 거래에 비해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가
3) 당해 거래가 다른 임·직원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없는가
4) 당해 거래로 인해 회사가 손금부인되는 등 과세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9.10. 관계회사와의 거래의 승인

회사가 20%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다른 회사,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는 다른 회사 또는 회사와 대주주를 공통으로 하는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당해 거래가 회사로서 필요한 거래인가

2) 당해 거래의 조건이 회사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특수관계 없는 제 3 자와의 거래에 비추어 불리하지 않은가
3) 당해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당하는 등 과세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9.11. 채무보증의 승인

제 3 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결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당해 보증이 회사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가
2)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충분한가
3)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회사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할 경우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회사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求償權) 행사가 실효성이 있는가

9.12. 채권포기의 승인

회사가 타인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는 결의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반대급부의 제의가 있고 채무자의 자력으로 보아 그 이상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9.13. 기부행위의 승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기타 자산을 교부하는 행위(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1)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부금을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을 당한 이재민을 돕는 경우
2) 기타 당해 기부로 인해 장래 회사에 이익이 되고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부를 하더라도 현재 또는 장래의 회사의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없거나 예상되지 않는 경우

9.14. 신주의 발행

신주발행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당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가
2) 배당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장기적으로 우량한 자금조달방법이 없는가
3) 현재의 자본시장의 상황으로 보아 신주발행이 성공할 수 있는가
4) 인수기관이 신뢰할 수 있고 수수료 등이 다른 인수기관과 비교하여 적정한가

9.15. 신주의 제 3 자 배정시 유의사항

신주발행을 할 때에는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것(“주주배정”)이 원칙이다. 주주배정이 아닌 다른 방법(“제 3 자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현재 실행하고자 하는 제 3 자 배정이 정관에 정한 제 3 자 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가

2) 제 3 자 배정의 발행가액이 주식의 시가에 비추어 공정한가
3) 현재 회사가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4) 특히 제 3 자 배정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5) 자금조달 및 제 3 자 배정을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발행하는 주식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정한 수량인가
6) 제 3 자 배정으로 인해 과세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9.16. 사채의 발행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회사가 당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가
2) 달리 보다 우량한 조건의 자금조달 방법이 없는가
3) 사채상환에 어려움이 없는가
4) 인수기관이 신뢰할 수 있고 수수료 등이 다른 인수기관과 비교하여 적정한가

9.17.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결의를 할 때에는 앞의 9.15. 및 9.16.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9.18. 감사인의 선정

이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외부감사인의 제청에 관여할 경우에는 감사인의 과거의 실적과 신뢰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

9.19. 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영업보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할 경우에는 주주, 일반투자자, 채권자, 기타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관련정보가 진실하고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유의하여야 한다.

9.20. 배당안의 승인

이익배당안을 승인할 경우에는 상법이 정하는 배당한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배당에 따른 금전의 사외유출이 회사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9.21. 중간배당

중간배당을 결의할 때에는 중간배당으로 인해 당해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간배당으로 인해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사들이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매우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9.22. 주식배당

주식배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가와 발행가액(액면가)과의 괴리가 지나쳐 회사가 유리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는지, 현재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23. 자기주식의 취득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할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사정에 미치는 영향, 주가에 미치는 영향, 장차 손해 없이 처분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24. 합병 · 분할

합병계약(분할합병 포함) 또는 분할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법정의 제반사항에 어긋남이 없는지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합병비율 또는 분할비율이 공정한지, 그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9.25. 회사에 대한 매수제의

회사에 대한 매수제의가 있는 경우(적대적 또는 우호적 매수제의 포함), 당해 매수제의가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당해 매수제의의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매수제의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당해 매수제의 또는 그 실행의 결과 회사 및 주식의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법령과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의 주식에 관해 공개매수시 이에 관한 의견을 표시할 경우, 투자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진실한 상황을 알리며 객관적인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9.26. 전문의견의 참조

이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 자산, 주식 등의 평가 또는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그 전문성이 이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얻도록 하여야 하고 그 자문을 문서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27. 회의자료의 보관

이사회 의사록을 비롯한 이사회의 회의자료는 추후 이사의 책임의 유무에 관한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그 자료를 최소 2 년간은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경우 이사회의 회의자료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사는 회의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28. 회사의 현황 파악

이사는 회사의 재산상태, 영업의 추이 등 회사의 현황을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이 점에 관해 회사에 정보를 요구하고 회사는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이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규준으로 삼는다.